

대전보건대학교 앵커사업단 운영규정

2025. 03. 28. 최초제정

2026. 09. 07. 부분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는 「지역성장 인재양성 체계(앵커) 사업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성공적인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학의 앵커사업단 운영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6.09.07.>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사업 추진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사업의 이행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4조(조직) ①사업 운영을 위하여 앵커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<개정 2026.09.07.>

②사업단에는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업단장(이하 “단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전임교원 중 대학 전반의 업무 조정역할이 가능한 처(단)장급 이상의 보직자가 된다.

③사업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센터 또는 팀을 둘 수 있고, 필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팀장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업무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앵커기본계획 및 앵커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한 대학의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<개정 2026.09.07.>
2.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 및 지원
3. 사업 규정 및 시행지침 관리에 관한 사항
4. 사업비 예산 편성과 변경, 사업비의 집행,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
5. 사업 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6. 사업 성과의 대내외 홍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앵커사업단추진위원회) ①사업의 계획수립, 예산편성, 사업성과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앵커사업단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6.09.07.>

②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내·외부위원, 간사를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 및 위원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④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장, 대외부총장, 교학부총장, 앵커사업단장으로 한다.
-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 1. 사업 추진 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 2. 사업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3. 사업 추진 점검 및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
 4. 평가 및 환류 등 성과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7조(앵커사업운영위원회) ①사업 실무운영을 위하여 앵커사업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6.09.07.>

-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,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으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사업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
 2. 사업 실행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검토
 3. 사업진행 및 환류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앵커사업자체평가위원회) ①사업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앵커사업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26.09.07.>

- ②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, 내·외부위원,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-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, 간사는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자체평가는 사업 기간 중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1. 중간평가 : 추진과제별 실적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, 개선방안 모니터링 등
 2. 최종평가 : 성과지표별 정량 성과평가, 추진과제별 정성평가 등
- ⑦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
1. 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 실적에 관한 사항
2. 사업성과 및 환류에 관한 사항
3.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사업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9조 <삭제 2026.09.07.>

제4장 사업비 관리

제10조(회계 및 정산) ①사업단의 수입·지출은 산학협력단 회계 계상을 원칙으로 한다.
②회계 관련 제반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사업비 집행관리 및 운영지침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따른다.

제11조(기타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관기관의 운영규정과 대학의 관련 지침 등을 따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.